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54
----------	-------

발의연월일 : 2026. 2. 13.

발 의 자 : 이종욱 · 안철수 · 송언석
윤영석 · 윤한홍 · 박덕흠
엄태영 · 박충권 · 조은희
박상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해신항이 디지털·친환경 도입, 북극항로 기·종점 요충지로 부상함에 따라 진해신항의 개발로 인하여 부산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전과 관련하여 그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국가 해양·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항만 중심의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단순한 행정구역 기준이 아닌 부산신항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부산항을 중심으로 부산과 경남 창원 지역을 해양수도권으로 집중 개발하고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6조 및 제10조제3항).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부산광역시”를 “부산광역시(부산항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장은”을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으로, “군수”를 “시장·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산광역시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부산광역시장이”를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는”을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이전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u>부산광역시</u> 로 이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 ----- <u>부산광역시(부산항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u>부산광역시</u> 장은 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u>군수</u>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기관의 의견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이전기관 및 그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여 이전기관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u>광역시</u> 장 및 <u>도지사</u>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 <u>시장·군수</u> ----- ----- ----- ----- ----- ----- ----- -----.
② <u>부산광역시</u> 장은 이전기업이 이전하는 지역의 <u>군수</u> 또는 구	② <u>시·도지사</u> 는----- -----

청장 및 이전기업과 협의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지원계획 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u>부 산광역시장이</u>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 도 또한 같다.	③ ----- <u>시</u> · <u>도지사가</u> ----- ----- ----- ---. ----- -----.
제10조(해양 특화지구의 지정)	제10조(해양 특화지구의 지정)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부산광역시는</u> 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특 화지구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 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 다.	③ <u>지방자치단체는</u>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